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8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1) 상정, 축조심사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전·현직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 단서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 ①·② (생 략)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현행법상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18조의4), 스포츠윤리센터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또는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법 제18조의5),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단체 책임자 징계요구 및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8조의9).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장,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자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의7).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사기관에 고발,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등을 할 때, 정보 공개 및 자료 제공 금지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제공 또는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및 신고·상담·임시보호시설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이후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음.

다만, 안 제18조의4제3항이 정보 공개 범위를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과 달리 안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및 신고·상담·임시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자료 등 신고·상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음.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포츠윤리센터가 다루는 사안의 위중함, 제공 동의한 정보의 범위의 모호성,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및 「성폭력방지법」

등에서는 관련 업무 전·현직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보장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1].

문체부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 관련 조사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안 제18조의10의 경우

1) 유사 입법례

입법례	신고자 인적사항	업무 종사자의 비밀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 방지법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2)3)].

2) < 문체부 수정안 >

현행법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3) 유사 입법례

입법례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법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②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체육단체의 징계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책임자 징계 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문체부장관에게 징계 요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제18조의9제1항·제2항).

일례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등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4].

그런데, 문체부장관이 요구한 징계 수준 대비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체육단체에서 의결한 수준이 경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징계 결정 사항을 소명하기 위한 체육단체의 근거자료 제출 등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 이후의 절차가 현행법상 부재함.

이에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징계 절차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4)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대한체육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전정지

참고로, 현행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때, 근거자료를 반드시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